

##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과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2022. 2. 8.)

### 제2장 교육과정위원회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부처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 부학장, 교육혁신부처장, 융합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 또는 내부 전문가와 학생위원을 포함한 총 15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8. 11. 26, 2020. 3. 16., 2022. 8.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각 단과대학 및 학문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교무처 학사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임기 이전의 위원 교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삭제 2020. 3. 16.>

**제3조(회의 및 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한다.(개정 2020. 3. 16., 2022. 2. 8.)

1. 교육과정(교양, 전공, 융합, 비교과)의 교육목표, 인재상, 역량 등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양, 전공, 융합, 비교과)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교양, 전공, 융합, 비교과)의 개편(신설,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교양, 전공, 융합, 비교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
6. 교수방법 및 성적평가방법의 개선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7. 강의평가 운영 및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제3장 교양·전공·융합·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제목변경 2020. 3. 16.]

**제5조(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6., 2022. 2. 8.)

1. 교양교육과정위원회
  2. 전공교육과정위원회
  3. 융합교육과정위원회
  4.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 ② 분야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개정 2020. 3. 16., 2022. 2. 8.)
- ③ 회의는 각 분야별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한다.(개정 2020. 3. 16.)
- ④ 분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6.)

**제6조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더:함교양대학부학장, 교무부처장, 학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자문위원과 학생위원을 포함한 총 15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개정 2020. 3. 16., 2022. 8. 25.)

- ② 위원장은 더:함교양대학 부학장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기초교양교육팀장으로 한다.(2020. 3. 16.)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이전의 위원 교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④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6., 2022. 2. 8.)
1. 대학 인재상 및 교육목표의 실현과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2. 교양 교과목과 핵심역량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3.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4.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5. 교양교과목의 교재출판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6. 이 외에 본교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및 심의
  7.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신설,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제목변경 2020. 3. 16.]

**제7조 (전공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단과대학별로 전공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단과대학의 전공교육과정위원회는 단과대학별 부학장, 각 단과대 소속 학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자문위원과 학생위원을 포함한 총 15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개정 2020. 3. 16., 2022. 8. 25.)

- ② 단과대학별 전공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단과대 부학장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종합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 ③ 각 단과대학별 전공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6., 2022. 2. 8.)
1. 전공역량 제고를 위한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2. 전공교육과정과 전공역량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3. 전공교과목의 개편(신설,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4. 전공필수와 선택의 구성비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5. 이 외에 단과대학별 전공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및 심의

[제목변경 2020. 3. 16.]

**제8조(융합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융합교육원장, 융합교육부원장, 교무부처장, 국제학부장, 학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융합교육담당교수, 자문위원 및 학생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8. 25, 2024. 1. 31)

② 위원장은 융합교육원장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8. 25, 2024. 1. 31)

③ 간사는 융합교육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 8. 25, 2024. 1. 31)

④ 융합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8., 2022. 8. 25.)

1. 역량 제고를 위한 단기교육과정 및 융합교육과정 편성과 개설에 관한 사항
2. 단기교육과정 및 융합교육과정과 역량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3. 역량 기반 단기교육과정 및 융합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단기교육과정 및 융합교과목의 개편(신설,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5. 단기교육과정 및 융합교육과정 이수와 인증에 관한 사항
6. 단기교육과정 및 융합교육과정 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
7.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DSC 공유대학) 교육과정관련 제반 사항
8. 이 외에 본교 단기교육과정 및 융합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본조신설 2020. 3. 16.]

[중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혁신부처장,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카리타스상담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카리타스봉사센터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인재개발부처장, 창업지원부단장, 재정지원사업단의 책임급 실무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자문위원과 학생위원을 포함한 총 15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개정 2020. 3. 16., 2022. 8. 25.)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부처장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③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6.)

1.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계획에 관한 심의
2. 비교과 교육과정과 핵심역량의 연계성에 관한 심의
3. 비교과 프로그램의 신설에 관한 심의
4. 이 외에 본교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및 심의

[제목변경 2020. 3. 16.]

[제8조에서 이동]

## 제4장 운영

**제10조 (행정절차)** ① 각 분야별 위원회 간사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편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회의 안건을 교무처에 공문으로 제출한다.(개정 2020. 3. 16., 2022. 2. 8.)

② 교육과정위원회 간사는 교무처장의 승인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개정 2020. 3. 16.)

③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신설 및 개편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배정하여 검토하게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제10조 삭제<2020. 3. 16.>**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을 교육혁신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16.]

[중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 12조(운영세칙)**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7.)**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01)**

**제 1조(시행일)** 이 전부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6)**

**제 1조(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벤처창의교육원”을 ‘교육혁신처’로, ‘Cando 교육’팀을 ‘교육혁신팀’으로 한다

**부 칙(2020. 3.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